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231395

정보공개서 최초등록일 2023.09.26

홈페이지 : 없음

정보공개서 최종등록일 2024.05.09

고기에서고기까지 정 보 공 개 서

고기에서고기까지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고기에서고기까지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소재지]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중원동로 38, 상가동 지하103호
[가맹본부 대표전화 및 가맹사업부 전화번호] TEL : 055-547-9282
[대표 e-mail] kmh810416@naver.com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 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 (<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고기에서고기까지			
영업표지	주 소			
고기에서고기까지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중원동로 38, 상가동 지하 103호(부흥동, 태영데시앙)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개인사업자	2019.11.12	강민화	055-547-9282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552-14-01128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당사는 최근 3년 동안 특수관계인이 없습니다.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고기에서고기까지	
상 호	고기에서고기까지 점	
서비스표	 고기에서·고기까지 무한리필·워터에이징속성	등록번호: 4019309040000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	-	-	-	220,042	-	-
2022	-	-	-	349,494	-	-
2023	-	-	-	515,226	-	-

※ 당사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하여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으로 이를 대체합니다.

2)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강민화	대표	2019.11~현재	대표	가맹점 관리 회사업무총괄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작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1	0	4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해당사업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사업을 경영한 사실이 없습니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여부 (일자)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 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고기에서 고기까지 (상표권)	해당상표를 가맹점운영권 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한	2022.11.04 등록	등록 4019309040000	강민화	2032.11.04

※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Ⅱ.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1. [고기에서고기까지]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 2023년 03월 17일

(실제 직영점을 시작한 날: 2019년 11월 12일)

2. [고기에서고기까지]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고기에서 고기까지	고기에서 고기까지	강민화	2023.03.17~현재까지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중원동로 38, 상가동 지하103호

3. [고기에서고기까지] 업종

영업표지	업 종	
고기에서고기까지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한식	돼지고기

4.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전체	가맹점 수	직영점 수	전체	가맹점 수	직영점 수	전체	가맹점 수	직영점 수
전체	1	-	1	1	-	1	3	2	1
서울	-	-	-	-	-	-	-	-	-
부산	-	-	-	-	-	-	-	-	-
대구	-	-	-	-	-	-	-	-	-
인천	-	-	-	-	-	-	-	-	-
광주	-	-	-	-	-	-	-	-	-
대전	-	-	-	-	-	-	-	-	-
울산	-	-	-	-	-	-	-	-	-
세종	-	-	-	-	-	-	-	-	-
경기	-	-	-	-	-	-	-	-	-
강원	-	-	-	-	-	-	-	-	-
충북	-	-	-	-	-	-	-	-	-
충남	-	-	-	-	-	-	-	-	-
전북	-	-	-	-	-	-	-	-	-

전남	-	-	-	-	-	-	-	-	-
경북	-	-	-	-	-	-	-	-	-
경남	1	-	1	1	-	1	3	2	1
제주	-	-	-	-	-	-	-	-	-

5. 최근 3년간 해당 가맹점 수

연도일자	계약연초	신규개점	계약종료	계약해지	명의변경	계약연말
2021	-	-	-	-	-	-
2022	-	-	-	-	-	-
2023	-	2	-	-	-	2

6. 해당 가맹사업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지역	2023년 말 가맹점수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 ² 당	상한	면적 3.3m ² 당	하한	면적 3.3m ² 당	
전체	2	해당없음	-	-	-	-	-	-
서울	-	해당없음	-	-	-	-	-	-
부산	-	해당없음	-	-	-	-	-	-
대구	-	해당없음	-	-	-	-	-	-
인천	-	해당없음	-	-	-	-	-	-
광주	-	해당없음	-	-	-	-	-	-
대전	-	해당없음	-	-	-	-	-	-
울산	-	해당없음	-	-	-	-	-	-
세종	-	해당없음	-	-	-	-	-	-
경기	-	해당없음	-	-	-	-	-	-
강원	-	해당없음	-	-	-	-	-	-

충북	-	해당없음	-	-	-	-	-	-
충남	-	해당없음	-	-	-	-	-	-
전북	-	해당없음	-	-	-	-	-	-
전남	-	해당없음	-	-	-	-	-	-
경북	-	해당없음	-	-	-	-	-	-
경남	2	해당없음	-	-	-	-	-	-
제주	-	해당없음	-	-	-	-	-	-

※ 당사 [고기에서고기까지]의 가맹점이 5곳 미만으로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8. [고기에서고기까지]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고기에서고기까지]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2	161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해당 가맹사업의 가맹점 관리를 위한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는 광고·판촉에 관한 지출 내역이 없습니다.

11. 가맹금 예치 기관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농협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지점 또는 부서	주소	전화번호
농협은행	진해중앙지점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벚꽃로 69 농협	055-543-0011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농협은행] 에 [계약 체결일과 동시에] 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농협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 설치한 후 “예치 서비스”를 클릭한 다음 고기에서고기까지를 찾아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귀하는 또한 [농협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 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금 예치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의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를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외부공사, 소방방염시설공사, 전기증설공사, 철거공사, 화장실공사, 덕트외부입상공사, 가스공사, 후드제작, 냉난방기기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 분	지급 대상	예치대상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금액
계약이행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금액
설비,오픈행사 등 기타비용	타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금액

한국공정거래조정원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8,800	-	-	-	(예외조건)
가입비	5,500	계약 체결과 동시지급	당사가 가맹사업법에 의하여 반환의무가 있는 경우	-가맹 계약을 위해 소요된 실제 비용 -영업개시이후 반환되지 않음.	반환시 당사에서 정한 기준의 위약금을 공제
교육비	3,300	계약 체결과 동시지급	교육 시작 전에 계약해지	교육에 소요된 실제비용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2) 계약이행 보증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이행 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없음)

구분	금액	지급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 고
당사는 계약이행보증금이 없습니다.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금액(단위: 천원)
합 계	[8,800]
가맹비	5,500(부가세포함)
교육비	3,300(부가세포함)

※ 상기 예치가맹금과 관련한 개점 전 해약에 따른 위약금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점 전 해약에 대한 위약금
<가맹계약서 제20조 [개점 전 해약에 대한 위약금]> “을”은 “갑”에게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별첨1]의 대금지급방법(예치 포함)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다. 이때 “을”의 일방적인 변심에 의하여 개점 전 해약을 요청할 경우 “갑”은 “을”에게 지급 받은 금액 중 반환 하여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위약금 규정에 따라 상계처리 후 반환 한다. 1. 계약체결일 이후로부터 “을”이 해약을 요청한 경우에 가맹계약서상 명시된 예치금의 30% 2.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이 지나 “을”이 해약을 요청한 경우는 가맹계약서상 명시된 예치금의 50% 3. 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1. 물품 구입 및 임차><별첨#2,별첨#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총계	[160,600]		4,015	※[132]㎡ 기준(40평)	
인테리어 (점포 내장공사)	(협력업체)	96,800	2,420	계약 체결시 개별 계약	공사발주 전 계약해지
주방설비/ 집기	지정업체 (미정)	49,500	1,237	계약 체결시 개별 계약	상품발주 전 계약해지
간판	(협력업체)	7,700	192	계약 체결시 개별 계약	시공발주 전 계약해지
최초 상품 비용	(협력업체)	6,600	-	점포개설 전 3일	상품 미공급시
검수비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 자체 시공시 : 3.3㎡당[220,000원/부가세포함] 부담		계약 체결시 개별 협의	공사착수 전 계약취소

-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 별도비용: 외부공사, 소방방염시설공사, 전기증설공사, 철거공사, 화장실공사, 홀덱트, 덕트외부입상공사, 가스공사, 후드제작, 냉난방기기, 소방, 수도배관, 음향, 외부테라스, 각종 가구류, 초음파세척기(선택사항) 등은 포함되어있지 않고 별도비용이 부담됩니다.
- ※ 자세한 비용은 계약체결 시 매장실측 후 별도로 제공안내하고 있습니다.
- ※ 지정업체의 정보는 정보공개서의「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표 4-1 지정업체 LIST>」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인테리어 공사 등에 대해서는 당사가 직접 공사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본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를 위해 당사가 규정하는 컨셉트를 기준으로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귀하는 귀하의 책임으로 점포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귀하가 점포를 선정하는데 있어 도움을 주기 위하여 설치장소, 통행인의 수, 지역의 특징, 업종의 특성에 따른 매출 성향 등을 귀하에게 조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가 조언한 경우라도 최종 의사결정은 가맹희망자에게 있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가맹사업(영업)이 가능한자	가맹사업이 가능한자
종업원	특별한 기준없음	1) 고기에서고기까지 직영점 및 타 가맹점 직원을 자신의 점포에 근무하도록 유도할 수 없음. 다만, 가맹본부나 다른 가맹점 사업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가능함. 2)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3) 미성년자가 아닐 것 3)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취득 가능자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해당 가맹사업의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8) 당사는 가맹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없습니다.

당사는 분납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업 개시 이전 부담하는 최초 가맹금은 전부 일시불로 결제하여야 합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부담

귀하가营业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로열티	가맹본부	매월 ₩330,000원 (정액)	익월10일	후불로 반환없음	-	-
광고 부담금 (전국광고)	가맹본부	가맹본부(50%) 전체 가맹점사업자 (50%)	분담금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광고미 실시	광고집행 시 반환 안됨	표 5-4 광고분담내역 참고
광고 부담금 (지역광고)	가맹본부	가맹본부(50%) 지역 가맹점사업자 (50%)	분담금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광고미 실시	광고집행 시 반환 안됨	
개점 후 교육훈련비	가맹본부	실 비	계약체결과 동시	교육비 납부 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교육 시행 후 반환 안됨	교육 필요시 지급 (보수.양수, 특별교육)
판촉분담금	가맹본부	행사별로 분담 등	-	-	판촉활동 실시후 반환안됨.	표 5-4 광고분담내역 참고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 비용	지정업체 (미정)	협의	-	-	-	-
점포환경 개선비용	지정업체 (미정)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설치전 100%	-	-	VII.가맹본부의 경영및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참조
POS시스템	지정업체 (미정)	월44,000원 (3년약정)	계약체결시 개별계약	설치 전 계약취소	-	-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20%	지급기일의	없음	-	모든 금전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급기일 경과시
--	--	--	----------------------	--	--	----------

※ 위 내역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변경 및 추가될 수 있습니다.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기준: 2023년)	내용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해당없음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해당없음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위생, 재고관리 등을 포함한 점포 경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가맹점사업자의 점포를 점검하고 기준에 위반하는 결과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 항목	내 용	시기	비고
상품 및 재고관리, 품질관리	- 가맹점 사업자의 상품 및 재고 수량을 조사하여 문서기록과 실제량 비교를 통한 재고관리 -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원.부재료 사용 및 조리방법, 판매방법 등에 관한 사항	수시	문의: 가맹본부
각종 설비관리 및 매장관리	- 가맹점사업자의 각종 설비관리 상태 점검 - 매장의 청결, 위생, 상품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접객 및 교육상태	직원 복장 및 고객응대방법 준수 여부		
회계처리	매출상황 및 매출장부, POS상의 각종 정보	수시	
기 타	종업원 코칭 상담, 마케팅 및 서비스 운영 체계	수시	

컨설팅, 본사 직급교육 실행 및 운영 및 조리메뉴얼 준수여부		
--------------------------------------	--	--

※ 당사는 상기 사항과 같은 관리.감독을 위하여 영업시간 중에 가맹점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별도의 비용은 없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가맹계약서 제 42 조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①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 승계여부.

“갑”이 해당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을”은 계약관계를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다. 다만 “을”이 새로운 가맹본부와의 계약관계의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가맹계약관계에서 탈퇴할 경우에는 “갑”의 귀책사유로 인한 가맹계약 해지에 해당하므로 “을”은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가맹금의 일부를 반환 청구할 수 있다.

②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갑”이 사용을 허락한 상표 및 서비스표 등의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더 이상 그 독점적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에는 “갑”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하여 “을”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을”과 협의하여 이를 배상한다. 또한 “갑”이 대체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객관적으로 만족할 만한 것이 못되는 경우에는 “을”은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및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가맹금의 일부를 반환 청구할 수 있다.

③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갑”이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미리 “을”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가맹계약을 해지하도록 하며, 이 때에도 “을”은 “갑”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가맹금의 일부를 반환 청구할 수 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가. 잔여계약기간으로 계약시

잔여계약기간으로 체결시 영업양수인은 당사에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위 : 천원)

구분	금액	비고
교육비	3,300	부가세포함
계약이행보증금	없음	부가세없음

나. 신규계약으로 계약시

신규계약으로 체결시에는 영업양수인은 당사에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양도과정의 부담은 신규계약시의 부담 금액과 동일합니다.

(단위 : 천원)

구분	금액	비고
가맹비	5,500	부가세포함
교육비	3,300	부가세포함
이행보증금	없음	부가세없음

- ※ 귀하가 운영하는 [고기에서고기까지]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 귀하는 1개월 전에 당사에 동의를 구하는 의사를 서면으로 신청하여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6.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표 5-2 영업양도절차 LIST>」에 나와 있습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귀하는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 된 경우에는 다음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계약종료 후의 조치

<계약서 제 41 조 [계약 종료와 그 조치]>

- ① “본 계약”이 해지, 기간만료, 갱신거절 등의 사유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을”은 본 계약 제7조에서 정하는 가맹점 운영권을 상실하며, “갑”과 “을”은 제2항 내지 제6항의 조치를 취하고, 원상회복 및 정산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② “을”은 본 계약 관계의 종료일로부터 가맹점의 운영을 즉시 중단하고, “갑”의 상호, 상표, 서비스표, 영업비밀, 노하우 및 설비 등의 사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 ③ “을”은 “갑”으로부터 지급받은 운영매뉴얼, 규정집, 전단지, POS시스템 등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갑”을 표시하는 모든 공작물, 건물 내외 장식, 간판 등 기타 상징물을 해지일 또는 계약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철거하여야 한다. 이때 철거·원상회복의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 ④ “을”이 보유하는 운영매뉴얼 등 본 계약과 관련하여 “갑”으로부터 취득한 일체의 자료는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관련된 어떠한 사본이나 기록도 보유하지 않는다.
- ⑤ “을”이 제3항 규정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갑”은 가맹점에 출입하여 직접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그 철거를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에 “을”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갑”은 이에 소요된 시설물 철거비용의 상환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⑥ “을”은 계약의 기간 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하는 경우, “갑”의 노하우를 활용하여 동일한 영업을 영위하거나 “갑”의 브랜드 및 가맹사업을 유사하게 변형하여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⑦ “을”은 계약의 기간 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하는 경우, “갑”의 영업비밀 및 노하우 등 “갑”의 중요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공연히 온라인·오프라인 상에서 “갑”을 비방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갑”의 명성이나 명예, 신용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의 사유로 “갑”의 가맹사업에 장애가 초래되거나 손해가 있는 경우 “갑”은 손해배상을 청구 할수 있다.
- ⑧ “갑”과 “을”은 본 계약관계의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하여야 한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 1) 귀하가 해당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후첨 [별첨#2, 별첨#3] 참조.

-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 개점 이후에도 추가품목 구입시 요구, 권유 기준에 따라 물품을 구입하여야 합니다.
-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 자세한 내역은 계약체결 시 매장실측 후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1) 당사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 2) 당사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

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매)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아래>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표 5-1 판매상품 LIST>	아래와 같음	1회위반 : 서면시정요구 2회위반 : 서면시정요구 3회이상위반 : 계약해지절차	

[취급상품 제한내용 및 조건]

취급상품 제한

<가맹계약서 제 27 조 [영업의 표준화와 판매가격의 권장]>

- ① “을”은 식품의 조리방법, 상품종류, 판매방법, 고객 서비스 향상 등에 대하여 “갑”의 이미지 및 맛의 통일성과 독창성을 유지하기 위한 “갑”의 지도 지침 및 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한다. 특히 제조 매뉴얼에 의하여 제조하여 맛의 균일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② “을”은 “갑”의 사전승인 없이 “갑”이 지정한 상품이나 메뉴 이외의 상품이나 메뉴를 제조·판매할수 없으며, “갑”이 메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메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가맹계약서 제 32 조 [물품 등의 공급 중단]>

- ① “갑”은 “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두 경고 후 시정이 되지 않을 시 7일 전에 서면으로 예고한 후 “을”에 대한 물품공급 등의 영업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재공급 등의 제한해제 조건을 지체 없이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0. “을”이 “갑”의 동의 없이 임의로 판매상품을 변경·추가하거나 “갑”이 제시한 상품의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 전 상품의 주재료는 가맹본부에서 협의된 사항들로 사용하고 부재료 또한 가맹본에서 개발된 것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조리시 표준화된 조리법을 사용, 동일한 맛을 낼수 있어야 합니다.
-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고객)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만19세 이하	주류	거래상대방별로 기재된 상품은 판매할 수 없음.	1회위반 : 서면시정요구	-
경쟁업체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로부터		2회위반 : 서면시정요구	
다른 가맹점 사업자	공급받은 상품 및 제품		3회이상위반 : 계약해지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5-1 판매상품 LIST>

구분	상품·용역명	권장가격 (단위: 원)	비고
----	--------	--------------	----

1	숙성고기	삼겹살,오겹살, 목살,항정살,가브리살,국 내산뒷고기	뷔 페 식	15,900 (성인)	홈페이지에 공지 또는 서면통지 또는 정보통신망 공지
	양념육	양념목살,매운양념목살, 간장닭갈비, 매운간장닭갈비, 국내산벌집껍데기, 훈제오리		9,900 (8~11세)	
	냉동육	국내산돈두롤대패, 우삼겹		4,900 (미취학)	
2	된장찌개			3,000	
3	공기밥			1,000	
4	비빔면			3,000	
5	계란찜			3,000	
6	냉면(물, 비빔)			5,500	
7	소주			4,000	
8	맥주			4,000	
9	막걸리			4,000	
10	음료수			2,000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
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가격통보방법 및 제한]

가격 제한

<가맹계약서 제 27 조 [영업의 표준화와 판매가격의 권장]>

- ④ “을”은 “갑”이 공급하는 상품 및 용역의 소비자 가격에 관하여 가맹사업의 통일
성 유지를 위하여 “갑”이 제시하는 권장가격을 준수하도록 노력하며,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위하여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판매상품별 소비자 권장가격을 고시
하여야 한다.
- ⑤ “갑”은 해당지역의 시장상황이나 소비자의 동향 또는 영업정책 등을 고려하여
“을”에게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소비자 판매가를 정하여 권장 할
수 있다. 다만, “을”이 권장된 가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을”은 “갑”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 시행 1개월전에 “갑”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당사는 시장상황이나 소비자의 동향 또는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소비자 판매가를 정하여 권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권장 가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사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고 당사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당사와 동일한 메뉴를 취급하는 업종	고기에서고기까지	해당없음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1000m이내	계약서 별첨에 영업지역 표시
단, 특수상권(백화점, 마트, 시장, 지하상가,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공항, 호텔 등)은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인정	계약서 별첨에 영업지역 표시

① “갑”은 영업지역을 구분하고 “을”은 자신의 책임하에 점포의 입지를 선정한다.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갑”은 해당 지역의 행정구역상의 구분, 시장의 특성, 업종 특성에 따른 매출성향 등을 고려하여 “을”에게 조언을 할 수 있다.

② “을”의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갑”이 조언한 경우라도 최종 의사 결정은 “을”이 하며 점포의 매출액 및 수익은 “을”의 관리능력이나 여건의 변화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음과 점포의 하자, 점포 개점과 관련된 제반 인허가 사항 및 상가 규약 등의 확인은 “을”의 책임임을 확약한다.

- ③ “을”이 선택하는 영업지역에 대하여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범위를 지도로 표시하여 첨부[별첨2]하고 그 범위 내에서 배타적 가맹점 운영권을 가진다.
- ④ “갑”은 전항의 “을”의 영업지역에 있어서 “을”에게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영업을 실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 및 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는다.
- ⑤ 가맹사업법 제12조의4에 따르는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로는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 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며, 이 경우 가맹계약을 갱신하는 시점에 “을”과 **합의하여 영업지역 변경**을 할 수 있다.
- ⑥ 해당영업 지역이 백화점, 대형마트, 쇼핑몰, 시장, 지하상가, 지하철역사내상가, 상가, 종합병원, 공항, 호텔 등에 상응하는 별도의 독립상권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상권(이하“특수상권”이라함)은 제외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점포가 "특수상권"내에 있는 경우에는 "특수상권"을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으로 한다.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조정 절차	재조정 절차	합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합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 영업지역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합의여부회신 - 합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완료 (신규점포입점가능)

불합리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①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②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③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당사의 브랜드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 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 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 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해당사항 없음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42%	58%	-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기간

해당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2] 년입니다. 다만, 본 계약의 재계약 기간은 2 년간으로 하며, 신규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자동연장된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갱신 거절사유

<가맹계약서 제 9 조 [계약기간과 갱신]>

② “갑”은 “을”의 가맹사업법상의 계약 갱신 요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그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1. “을”이 “갑” 또는 협력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채무의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물류비용 등을 상습적으로 연체할 경우
2. “을”이 가맹계약을 갱신하는 시기에 가맹본부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3.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갑”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을”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가. “을”의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
 - 나. “을”이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 다. “갑”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

라. “갑”이 “을”에게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 다만, “을”이 부담하는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

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4. 제40조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해지 사유 및 절차

<가맹계약서 제 40 조 [계약의 해지사유 및 절차]>

- ③ “갑”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일반해지), “갑”이 동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을”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2회 이상 서면으로 계약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을”이 제32조제1항 (물품 등의 공급 중단)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을”이 제9조(갱신거절사유) 제2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을”이 제21조(개점점검 및 승인)제3항 내지 제4항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나도 개점이 불가능한 경우
 4. “을”이 “갑”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가맹점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5. “을”이 가맹점 경영의 전반적·실질적인 부분에 관여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6. “을”의 계약 위반행위로 인하여 “갑”의 상표 및 가맹점의 명예 또는 상품판매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될 경우.
 7. “을”이 갑의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가맹점운영권의 명의를 변경하거나 권리를 양도·처분하거나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경우
 8. “을” 및 “을”의 종업원이 “갑” 또는 “갑”의 직원, 협력업체 직원, 고객에게 언어, 행동 등으로 위협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9. “을”이 그 밖의 기타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 계약해지 사유

<가맹계약서 제 40 조 [계약의 해지]>

④“갑”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고 없이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1. ‘을’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 ‘을’이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을’이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4. ‘을’이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갑’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5. ‘을’이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6. ‘을’이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 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 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갑’이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7. ‘을’이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8. ‘을’이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9.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 조건을 수정할수 있습니다.

계약 수정 사유
제 49 조 [계약의 효력 및 변경] ② “본 계약”의 체결 이후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과 “을”의 상호 합의 하에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1. 가맹사업법의 개정 및 관련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의 경우 2. 가맹사업의 동일화 및 활성화를 위해 영업방침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3.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어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요하는 경우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를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제도가 없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5-2 영업양도절차 LIST>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담당팀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잔여기간에 대한 양수 또는 신규가맹계약 조건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가맹본부

- ①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잔여계약 기간에 대하여 가맹점운영권이 인정되며, 양수에 따른 비용으로 정보공개서상의 양수인의 부담비용[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가. 잔여계약기간으로 계약시 부담비용]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② 다만, 당사와 영업양수인의 합의에 따라 신규가입조건과 동일한 조건[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나. 신규계약으로 계약시 부담비용]으로 신규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운영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비고
상속	상속인 사후통지시	모든 권리의무	상속인이 서면으로 상속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상속인 면담, 10일 가량소요) → 상속인에게 서면 통지 → 완료	-
대리행사	본부 승인시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내의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대리행사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대리인 면담 포함, 10일 가량 소요) → 승인여부통지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업무위탁	본부 승인시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내의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대리행사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수임인 면담 포함, 10일 가량 소요) → 승인여부통지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기타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의 서면에 의한 승인이 없는 한, 해당 가맹 계약으로 인한 권리와 의무를 전·대차하거나 질권설정 할 수 없습니다.

※ 가맹점운영권 관련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가맹계약 외 기타 부동산조건 및 권리 문제에 대해서는 당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또한 대리.업무위탁관련 당사가 승인하는 대리인,수임인의 조건은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하며, 영업 중에는 당사가 지정하는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하고, 개점 전 교육비는 귀하 또는 교육을 이수하는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귀하는 계약의 존속기간 중에는 물론이며 계약 종료 후 6개월의 기간동안 동일한 영업 지역에서 동일한 영업을 영위하거나 당사의 브랜드를 유사하게 변형하여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한기간	경업금지 되는 업종	제한지역
계약기간 중 또는 계약 종료후 6개월간	당사와 동일한 돼지고기나 쇠고기를 철판에 굽는 형태로 판매하는 업종 (가맹본부설립 또는 타사 가맹점 및 독립점포경영 포함)	계약기간 중: 국내 전 지역 계약종료후: 동일한 영업지역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가맹점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12:00 ~ 22:30	주6일이상 영업일로 하며 연속하여 5일 이상 휴업할 수 없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

에는 사전에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권장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가능인력	비고
3명 (협의결정)	직접 근무	당사로부터 승인을 받은 자	- 보건소의 건강진단결과서 발급가능자 - 점주의 부재시 가맹본부에 사전통보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매장 위생·청결	담당자 매장 방문 → 위생·청결도 확인 → 방문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수시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자
서비스 및 점포관리	담당자 매장 방문 → 서비스 및 점포관리 확인 → 가맹점 방문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수시	
제품의 표준화	담당자 매장 방문 → 매뉴얼 준수 및 사입체크 → 가맹점방문관리표 작성 → 완료	수시	
회계 감사	담당자 매장 방문 → 회계장부나 POS검사 → 감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 완료	수시	

※ 당사는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필요시 비정기적으로 관리·감독을 진행할 수 있으며, 가맹점사업자는 자신의 가맹점을 방문하는 것을 허락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가맹점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가맹점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서 및 영업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 기준

당사는 해당 가맹사업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5-3 광고분담내역 LIST>

구분	광고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전국광고	브랜드광고	50%	광고비 50%중 가맹점 총매출액 비율에 따라 산정 (전체가맹점)	광고계획공고→ 가맹점의 광고참여 여부결정→가맹점 부담액제시(명세서)	전국광고 (TV, 라디오, 5대 일간지 등) 동의 절차를 거친후 전체 가맹점사업자 50% 이상동의시 전체 적용
	상품광고				
	가맹점 모집광고	100%	없음	해당없음	
	상품광고+가 맹점모집광고	광고비의 50%	광고비 50%중 가맹점 총매출액 비율에 따라 산정 (전체가맹점)	광고계획공고→ 가맹점의 광고참여 여부결정→가맹점 부담액제시(명세서)	
지역광고	가맹점 매출증진	50%	광고비 50%중 가맹점 총매출액 비율에 따라 산정 (지역가맹점)	광고계획공고→ 가맹점의 광고참여 여부결정→가맹점 부담액제시(명세서)	지역단위광고 동의 절차를 거친후 전체 가맹점사업자 50% 이상동의시 전체 적용
개별광고	가맹점 매출증진	없음	100%	해당없음	단독광고
판촉	공동판촉활동	협의	협의 단,가맹점사업 자가 직접판매하는 상품의 할인비용이나 직접제공하는 경품,기념품,팜 플렛,전단,카드 로그 등	행사계획공고→ 가맹점의 광고참여 여부결정→가맹점 부담액제시(명세서)	동의 절차를 거친후 전체 가맹점사업자 70% 이상동의시 전체 적용

			홍보물 등의 비용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가 공동부담		
할인카드 멤버십 제휴 서비스	제휴행사	서비스로 인한 월 할인금액의 50%	서비스로 인한 월 할인금액의 50%	(가맹점)월 할인 금액제시→(본부)자료 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 부담액 송금	할인서비스 등의 종료시까지

※ 전국 및 지역단위별 광고 및 판촉활동은 당사는 물론 가맹점사업자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한 것입니다. 해당지역별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광고동의요건이 충족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참여하여야 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귀하는 본인의 비용으로 자기의 영업 지역 내에서 판촉 활동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귀하는 사전에 당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광고물, 기타 선전매체의 제작, 배포 등에 있어서 당사의 표준지침 및 아래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개별 광고/판촉활동

제 37 조 [광고]

- ⑥ 가맹점사업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영업지역 내에서 광고를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광고의 계획과 문안, 기타 광고와 관련된 세부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가맹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8 조 [판촉]

- ⑦ “을은 자기의 비용으로 자기 지역 내에서 판촉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을“은 판촉활동의 구체적 내용(판촉활동의 자료, 문구, 기타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갑“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

제 43 조 [손해배상 및 위약금]

- ① “을”의 귀책사유 또는 개인적 사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을”은 “갑”에게 위약금을 지급하되, 그 위약금은 “을”이 운영하는 점포의 과거 영업실적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다만, 영업을 시작한지 3개월이 되지 않은 경우 영업개시일로부터 해지일까지의 매출액을 3개월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 “을”의 직전 3개월간 월평균 매출액 X 5% X 잔여기간(월)
- ② “을”은 “갑”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맹점의 운영을 일방적으로 중단.방치.폐업 처리하거나 “고기에서고기까지”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지 않는 점포로 운영 또는 양도한 경우 “을”은 “갑”에게 위약별로 **금일천오백만원 (₩15,000,000)**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③ “을”은 계약위반으로 “갑”의 2회 이상의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될 시에는 가맹계약이 해지됨과 동시에 “을”은 “갑”에게 위약별로 **금일천만원 (₩10,000,000)**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④ “을”이 가맹계약서 제30조(자점매입금지)를 위반하여 자점매입을 한 경우 “을”은 위약별로 **금이천만원(₩20,000,000)**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⑤ “을”이 계약기간 내 또는 계약 종료 이후 제24조(비밀유지)와 제25조(경업금지)를 위반할 경우 “을”은 “갑”에게 위약별로 **금삼천만원(₩30,000,000)**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⑥ “을”이 계약 종료 후에도 제42조 제3항을 위반하여 당사의 상호,간판,기타 표시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을”은 위반일로부터 **1일당 금삼십만원 (₩300,000)**을 “갑”에게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 49 조의2 [손해배상]

본 계약 당사자는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및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 등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본 계약상 구제수단 외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① 본 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②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본 계약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을”은 “갑”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갑”에게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50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47	IV.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D-46	
점포개발 및	- 입지선정	필요시 실시	

상권분석 실시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34~31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30	
가맹금 예치	- 농협은행에 가맹금 예치	D-30(1일)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27~25(3일)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24(1일)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24~5(20일)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7~5(2일)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가맹거래사나 변호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권장드리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과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점포환경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 (장바구니 교체비)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 계약서 등 공사	○점포환경개선일로 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점의 통일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 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없는 사유로 계약종료(계약의 해지) 영업장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 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 정한 자를 통하 여 점포환경개 선을 한 경우에 는 점포환경개 선이 끝난 날부 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 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 계약서 등 공사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 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 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	--	--	---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지원제도를 운영하고자 계획중이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지원제도는 가맹본부의 경영사정 등에 의하여 지원제도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

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 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 (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 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 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30]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문의 :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 (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 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 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30]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 부담	문의 : 가맹본부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의 안정적인 점포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제도를 운영하고자 계획중이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지원제도는 가맹본부의 경영사정 등에 의하여 지원제도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신규 훈련	회사 소개, 메뉴 조리, POS 사용, 재고관리, 물품주문 및 구입 등	현장교육	가맹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필수 교육
양수 교육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보수 훈련	신메뉴 가공, 마케팅 실무 등	실습교육	교육내용에 따라 다름	비정기적 필수교육
특별 훈련 (파견)	서비스 관리, 현장 실무 등	현장(가맹점) 교육	교육내용에 따라 다름	비정기 교육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당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 (단위: 천원, 부가세포함)	비고
신규훈련	7일(4시간)	3,300(1인기준)	최초 계약 시 이수
양수교육	7일(4시간)	3,300(1인기준)	양수 계약시 이수
보수교육	사전통지	실비 청구	필요시 실시
특별교육		일정 자격 미달 가맹점에 실시되는 교육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	

※ 개업교육시 인원은 1명으로 한정합니다. 교육인원을 초과할 때에는 본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귀하가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개점을 할 수 없으며, 점포의 관리자로 근무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점 이후 당사가 정하는 필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기간 만료 후 갱신 거절될 수 있고, 물품공급 중단 및 가맹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으니 필히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경남	고기에서고기까지	경남 창원시 진해구 중원동로 38, 상가동

지하10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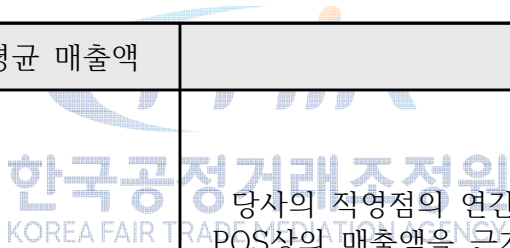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4년 2개월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527,753	 당사의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직영점별 POS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별첨 #1> 2021~2023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별첨 #2> 주방설비 및 집기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별첨 #3> 초도물품 리스트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별첨 #4>

점포예정지 인근 가맹점 현황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가맹점 10개의 일반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중인 가맹점이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 현황을 제공하며, 장래 점포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할 예정입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희망지역 :

NO	점포명	소재지	연락처
1			
2			
3			
4			
5			
6			
7			
8			
9			
10			



<별첨 #5>

점포예정지 인근 가맹점 현황자료 수령증

1. 점포예정지 인근 가맹점 수령일자 및 장소

수령일자	2024년 월 일 시 분
수령장소	

2. 가맹계약 희망자 정보

가맹계약 희망자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자택주소			

- * 상기 내용은 가맹사업희망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 본 수령 확인서는 2부가 작성되어 양 당사자가 1부씩 보관합니다.

가맹계약희망자 는(은) 정보공개서 수령시 점포예정지 인근 가맹점
현황 자료를 함께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가맹계약희망자: (서명또는날인)

가맹본부: (서명또는날인)

제 공 자: (서명또는날인)

<별첨 #6>

(앞 쪽)

가맹금예치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가맹점)명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
가맹 본부	상호명(영업표지)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
예치가맹금		₩ (금 원 정)
신청인의 계좌		
가맹본부의 계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7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맹금을 예치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치기관의 장 (지점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첨 #7>

정보공개서 수령확인 및 비밀유지 약약서

당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정한 규정에 따라 서면으로 제공하였고 가맹계약희망자가 이를 직접 수령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확인합니다. 또한 귀 사의 정보공개서를 수령하는 경우에 가맹계약 체결과 관련된 검토 자료로만 활용할 것이며, 귀 사의 영업비밀 또는 사업에 관한 중요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임과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약약합니다.

1. 정보공개서 주요사항

가맹본부 상호	고기에서고기까지	영업표지	고기에서고기까지
정보공개서의 주요목차	I.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등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VI.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2. 가맹계약 희망자 정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가맹계약 희망자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자택주소			

* 상기 내용 빈칸과 회색부분은 가맹계약희망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본 수령 확인서는 2부가 작성되어 양 당사자가 1부씩 보관합니다.

상기 본인은 수령지 에서 가맹계약서를 서면 으로부터 직접 제공 받았음을 확인 합니다.

상기 본인은 정보공개서 내용을 유출하지 않을 것을 약약 합니다.

정보공개서 제공일자: 2024년 월 일 (오전:오후) 시: 분

가맹계약희망자: (서명또는날인)

가맹본부: (서명또는날인)

제 공 자: (서명또는날인)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표지에 기재된)당사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